|  |  |  |
| --- | --- | --- |
| **통관분류 개혁 심화에 관한 건**해관총서 공고 2010년 제56호통관분류 개혁의 시행 이래, 해관(세관)의 통관 업무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이었고 개혁의 효과가 뚜렷했으며, 사회적 반응 또한 양호하여, 개혁의 예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해관의 감독관리 및 서비스를 진일보 향상시키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수출화물의 통관분류 개혁 시행의 기초 위에 전국 해관에 통관분류 개혁 업무를 진일보 심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유관사항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수출화물의 통관 분류 개혁을 전국 해관으로 확대 전개한다. 수입화물의 통관 분류 개혁은 북경(北京), 천진(天津), 대련(大连),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영파(宁波), 복주(福州), 하문(厦门), 청도(青岛), 광주(广州), 심천(深圳), 공북(拱北), 황포(黄埔), 강문(江门) 해관에 시범 시행한다. 2. 적용범위: 해관 통관업무 시스템을 통해 세관 신고를 진행하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분류를 적용한다. 3. 통관 분류는 해관이 기업 자금상황을 기초로, 상품, 물류 등 각종 요소를 종합하여, 위험도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통관 분류 업무를 시행한다. 4. 해관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신속한 통관 허가를 진행한다. 페이퍼 세관 신고증은 “사후 서류 교부”와 “현장 서류 교부” 등 2종 방식으로 기업이 자주적으로 선택한다. (1) “사후 서류 교부”는 해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 서류 교부” 통관 방식을 허가 받은 기업이 “무서류 세관수속”방식을 취하여 세관 신고증을 입력하고 해관에 신고하며, 해관의 통관 허가를 거친 후, 세관 신고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페이퍼 세관 신고증서를 제출한다. (2) “현장 서류 교부”는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 (해관총서령 제103호)의 요구에 따라 화물 통관 허가 전, 해관에 페이퍼 세관 신고증서를 제출한다. 5. 허가증과 관련된 수출입 화물에는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시범 해관 범위 내의 A류 및 이상의 수출입 기업과 대리 세관 신고기업은 등록지 해관에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해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허가받은 수출입 기업이 세관신고 기업에 세관신고를 위탁할 할 경우, 반드시 해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허가받은 세관신고 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7. A류 및 이상의 기업은 등록지 해관의 동의를 거쳐 해관 및 전자세관(E-customs, 电子口岸)과 협의를 체결한 후 중국 전역의 시범 해관 범위 내에서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8.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은 화물의 통관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관에 서류 교부 및 심사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9. 분류 통관되는 수출입 화물의 세관 신고증 및 첨부서류에 대해 기업은 잠정 보관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공고한다. 10. 본 공고 내용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공고 2009 제3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2010년 8월 27일  |  | **关于深化分类通关改革**海关总署公告2010年第56号分类通关改革试点开展以来，海关通关作业系统运行稳定，改革成效明显，社会反响良好，达到了改革的预期目标。为进一步优化海关监管和服务，提高通关效率，海关总署决定在出口货物分类通关改革试点的基础上，在全国海关进一步深化分类通关改革工作。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一、出口货物分类通关改革扩大到全国海关开展；进口货物分类通关改革在北京、天津、大连、上海、南京、杭州、宁波、福州、厦门、青岛、广州、深圳、拱北、黄埔、江门海关开展试点。二、适用范围：所有通过海关通关作业系统（H2000）报关的进出口货物均适用分类通关。三、分类通关是海关以企业资信状况为基础，综合商品、物流等各类要素，按照风险高低对进出口货物实施分类通关作业。四、对诚信守法企业的进出口货物，海关快速放行。纸质报关单证有“事后交单”和“现场交单”两种方式供企业自主选择。　　（一）“事后交单”，即经海关审核准予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的企业采取“无纸报关”方式录入报关单向海关申报，经海关核准放行后，报关人在规定期限内向海关递交纸质报关单证。　　（二）“现场交单”，即企业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103号）要求，在货物放行前向海关递交纸质报关单证。　　五、涉及许可证件的进出口货物不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　　六、试点海关范围内A类及以上的进出口企业和代理报关企业，可以向注册地海关申请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　　经海关审核准予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的进出口企业需要委托报关企业代理报关的，应当委托经海关审核准予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的报关企业。　　七、A类及以上企业经注册地海关同意，并与海关、电子口岸签订协议书后，可在全国试点海关范围内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八、适用“事后交单”通关方式的企业应当自货物放行之日起10日内到海关办理交单验核等相关手续。九、对分类通关的进出口货物报关单及随附单证实行企业单证暂存试点。具体事项另行公告。十、本公告内容自发布之日起施行，海关总署公告2009第33号同时废止。特此公告。　二○一○年八月二十七日 |